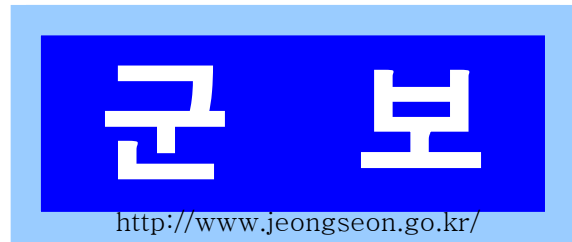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19호 2010. 6. 3. (목)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65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1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0-79호 정선 아리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19
- 정선군고시 제2010-80호 정선군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21
- 정선군고시 제2010-81호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25
- 정선군고시 제2010-82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27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319호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8
- 정선군공고 제2010-324호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31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2010-1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결산 공고..... 3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선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2010. 6. 3.

정선군규칙 제1165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선군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선 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정선 하늘터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등) 군수는 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각 묘역별로 기단의 명칭, 지구, 열, 행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기단별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암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화장유골의 처리와 유골의 인도) 정선 하늘터에서 화장한 유골은 그 유족에게 인도한다. 이 경우 유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장유골 인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환급) 조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권의 승계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와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의 통보방법 및 공고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사용기간의 종료일 3월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한다.

가. 매장자 인적사항,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기간 및 사유

다. 정선 하늘공원 대표자, 주소, 연락방법 등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용기간의 종료일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 한다. 2차 공고 완료 후 처리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관리 등) ①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개장명령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별지 제10-1호 및 제10-2호서식의 묘적부 또는 봉안(납골)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승계 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13조에 따라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허가증 교부) ①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사용료 납입영수증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비용) ①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매장묘 부대비용 : 매장비, 석물비, 석물설치비 등

2. 봉안묘 부대비용 : 작업비, 석물비, 석물설치비 등

②제1항의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 함께 징수한다.

제12조(표기사항)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묘비의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매장자의 성명

2. 연고권자의 성명

3. 기타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1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장사시설 내의 금지행위) ①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지정된 시설물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역 안의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역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고성방가, 음주난동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②공중위생,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필요한 음식은 제외한다.

제15조(운영규정) 조례와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시행규칙」
2. 「정선군납골당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 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사망사유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시설	분묘(단장, 합장, 봉안묘) / 하늘원(연고자실, 무연고자실)				
매장(분묘)기단	기단	지구	행	열	
하 늘 원	연고자실 제	호	번	/ 무연고자실 제	호
매장안치 일시			년	월	일
사용(재사용)기간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료	원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선 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용허가 신청 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인우보증서,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제적)등본
- 기간연장 신청 시 :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정선 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앞면)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년월일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허가내용	사 용 시 설	시 설 명	분묘(단장, 합장, 봉안묘), 하늘원		
		분 묘	기 단	지 구	행 열
		하 늘 원	연고자실 제 호 번, 무연고자실 제 호 번		
	사용(재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선 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

(뒷면)

허 가 조 건

1.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 만료 1월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연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분묘(단장, 합장) 및 봉안묘와 하늘원은 15년마다 연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다시 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2.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 나.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다.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라.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바.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 사. 장사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아.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자. 기타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정선 하늘터 사용허가 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사망사유	
	매장(봉안) 장소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대인, 소인, 사산아, 개장유골				
사 용 료	원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선 하늘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 선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개장신고필증(매장된 경우)

제 호

정선 하늘터 사용허가증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사망사유	
	매장(봉안) 장소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선 하늘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

(별지 제4호서식)

정선 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허가증 변경(재교부)신청서

허가번호 제 호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년월일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허가내용	사용시설	시 설 명	분묘(단장, 합장, 봉안묘), 하늘원	
		분 묘	기단 지구 행 열	
		하 늘 원	연고자실 제 호 번, 무연고자실 제 호 번	
	사용(재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변경(재교부) 사 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정선 하늘
공원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변경(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 정선 하늘공원 사용허가증(기 교부분), 훼손 및 분실사유서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화장유골 인도신청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정선 하늘터에서 화장한 유골의 인도를 요청하오니 유골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내용	시 설 명	정선 하늘터		
	화장일시	년 월 일 00 : 00		
사 유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정선 하늘공원 사용료 환급신청서

허가번호 제 호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년월일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허가내용	사용시설	시 설 명	분묘(단장, 합장, 봉안묘), 하늘원		
		분 묘	기 단 지 구 행 열		
		하 늘 원	연고자실 제 호 번, 무연고자실 제 호 번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기납부한 사용료		원			
환급사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정선 하늘공원 사용료를 환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1부
◦납입영수증 1부
◦계좌입금 통장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정선군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감면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년월일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시설	분묘(단장, 합장, 봉안묘), 하늘원, 정선 하늘터			
면제·감면사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5. 관외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6. 관내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 유공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료	원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정선군 장사시설 사용료를 면제·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 하

(별지 제8호서식)

정선 하늘공원 사용승계 신청서

사용허가 내역	사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시설	(허가번호 제 호)			
승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승계사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선 하늘공원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승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 ◦ 사용허가증 1부
◦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개 장 명 령 서

_____ 귀하

1. 개장을 요하는 분묘의 위치 :

2. 매장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3. 개장을 요하는 분묘의 사용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4. 개장을 명하는 사유 :

5. 개장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에 따라 개장을 명하니 기간 내 개장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개장하지 아니할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

묘 적 부

일련 번호	허가 번호	사망자주소			화장 매장 개장	매장장소	사망년월일	신 청 자 주 소			비 고
		성 명	성별	주민등록 번호		매장년월일	개장년월일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단 지구 행 열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10-2호서식)

봉 안 부

일련 번호	허가 번호	사망자주소			안치 장소		신 청 자 주 소			비 고
		성 명	성별	주민등록 번호	연고자실	무연고자실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안치년월일	안치년월일				
					호 번	호 번				
					년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11호서식)

정선 하늘공원 사용승계 허가대장

매장· 안치된 위치	사용자				승계자						비고 (연락처)
	사용허가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매장·안치된 자와의 관계	승년 월 일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매장·안치된 자와의 관계	승계사유	
단 지구 행 열 ※ 하늘원 - 유연고실 - 무연고실 제 호로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관	항	목		
납입 구분					
사용료		원			
상기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납부자 주 소 성 명					

영수증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관	항	목		
납입 구분					
사용료		원			
상기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납부자 주 소 성 명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관	항	목		
납입 구분					
사용료		원			
상기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납부자 주 소 성 명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관	항	목		
납입 구분					
사용료		원			
상기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납부자 주 소 성 명					

제 정 이 유

- 정선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완료에 따라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장사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장사시설의 사용원칙 규정(안 제3조)
-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규정(안 제8조)
- 사용료 외 부대비용에 대한 처리사항 규정(안 제11조)
- 장사시설 내 금지행위 규정(안 제14조)
- 다른 규칙의 폐지(부칙 안 제2조)
 -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 시행규칙」
 - 「정선군납골당설치조례 시행규칙」

정선군고시 제2010-79호

정선 아리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정선 아리랑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었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 5. 28.

정 선 군 수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정선 아리랑특구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일원(2읍 5면)
- 면적 : 975,075m²

2. 특구의 지정목적

- 정선아리랑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관광 문화 인프라 조성, 다양한 아리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정선아리랑과 지역의 관광상품 및 특산물과 연계한 특화된 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브랜드 재정립을 통해 아리랑의 고향인 정선의 이미지 제고

3. 특화사업의 내용

-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사업
 -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사업,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
- 정선아리랑 상품화사업
 - 정선아리랑 복합문화관광상품 개발사업, 정선지역 특산물 상품화사업, 정선아리랑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사업
- 정선아리랑 콘텐츠사업
 - 정선아리랑 명품 글로벌화사업, 정선아리랑 공공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강원도 정선군수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67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사업 : 2010~2013
 - 정선아리랑 상품화 사업 : 2010~2015
 - 정선아리랑 콘텐츠 사업 : 2010~2015
- 재원조달방법
 - 총 사업비 : 453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국비:118억원, 도비:60억원, 군비:270억원, 민자:5억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정선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아리랑고개(옛길) 조성을 위하여 법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산림시설 설치(임도)에 관한 특례와 법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국유림 대부에 관한 특례를 적용
-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을 위하여 법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농민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특례를 적용
-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을 위하여 법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심사에 관한 특례를 적용
-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을 위하여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화식품의 표시기준 별도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1, FAX : 02-503-0261) 또는 정선군 녹색정책과(Tel 033-560-2193, FAX : 033-560-21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정선군고시 제2010-80호

정선군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정선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6. 1.

정 선 군 수

정선군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제1조(목적)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애산리, 사북읍 사북리, 여량면 여량리 시가지 일원에 대한 광고물 시범사업 완료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난립 방지 및 도시미관 확보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관리유지에 제도적 근거 마련

제2조(특정구역지정) 특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가.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및 애산리 시가지 일원

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시가지 일원

다.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시가지 일원

2. 세부구간

가. 정선읍 역전지구

노 선 명	기 점	종 점	연 장	비고
정선역전지구	정선소방서	정선역	700m	이면도로 지역포함

나. 사북읍 사북리 시가지

노 선 명	기 점	종 점	연 장	비고
사북읍 시가지	38국도 사북나들목	사북 고등학교	800m	이면도로 지역포함

다. 여량면 여량리 시가지

노 선 명	기 점	종 점	연 장	비고
여량면 시가지	아우라지농특산 판매장	제1여량교	700m	이면도로 지역포함

제3조(표시제한·완화사항)

① 일반적 표시방법

1.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표시 할 수 있다.
2.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이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타인을 비방하거나 저속한 내용 또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보호 저해, 음란, 저속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예시 : 과부촌, 미시촌, 미인촌 등의 문자 또는 이와 관련한 도형·그림)
3. 모든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에 있어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할 수 없다.
4.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의 색상의 과다 사용을 금지하되, 원색 계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광고물등, 당해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자극적이지 않은 파스텔톤의 색채, 광고물등의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건물 또는 구역에 대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따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적용

1. 이 고시에 의한 특정구역은 2008년(사북읍 사북리 시가지), 2009년(정선읍

역전지구, 여량면 여량지구)에 각각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지역이며, 용도지역 분류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특성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배후지역임을 감안하여 “계획권역”으로 분류한다.

2. 이 고시에 의한 특정지역의 간판수량 및 크기는 “일반광고물 표시권역”으로 하며, 조명 및 색상은 정선읍 역전지구와 여량면 여량지구는 “일반광고물 표시권역”으로 사북읍 사북리 시가지는 “최대광고물 표시권역”으로 분류한다.

3. 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있어,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이나 해당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기존 지역특성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맞지 않은 경우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종류별 표시방법

1.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가. **업소별 1개 표시할 수 있고(5㎡이하의 가로형 간판 포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 위치는 층별 상단에 표시하고 가로형 간판의 크기는 해당건물의 가로폭 범위 이내로 하고, 세로의 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최대 5㎡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동일층에 2개 이상의 가로형 간판 표시시에는 세로폭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인접 간판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물의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표지판의 설치위치, 규격, 디자인 등에 대하여는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지원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제외하며, 업소별 간판 총수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가로형 간판의 문자와 도형은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 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3.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가. 1층을 제외한 업소별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세로쓰기를 하여야 한다.

나. **간판의 최대크기는 1㎡미만으로, 벽면으로부터 80cm까지 돌출할 수 있으며, 간판의 두께는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돌출폭을 일치시켜야 한다.**

4.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하여야하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옥상구조물의 벽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 상호,
주소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옥상에 의료기관명 또는 상징도안을 표시하는 경우

5.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상단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07.01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
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에 한하
여 연장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정선군고시 제2010-81호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0. 5. 31.

정 선 군 수

1. 2010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고시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10년 1월 1일 기준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 : 118,881필지

다.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2)당 가격(원)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가. 기 간 : 2010. 6. 1 ~ 2010. 6. 30(30일간)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가격을 제시하여 제출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033-560-2284, 560-21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 리 기 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 의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소유자와의관계				
대 상 지	⑤ 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⑥ 지 목		⑦ 실제이용현황		
	⑧ 지 가				
신 청 요 지					
신 청 이 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2010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 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없 음	

※ 기재요령 : ⑨ 신청요지는 상향·하향가격을 제시한다

⑩ 신청이유는 신청요지의 사유를 기재한다

※ 동일인이 여러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상토지와 신청요지, 신청
이유 항목에 대하여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수 있도록 한다.

정선군고시 제2010-82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고시 합니다.

2010. 5. 31.

정 선 군 수

1.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결정·고시

-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06년~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수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776외 4필지
- 다.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2)당 가격(원)
-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정정 결정·고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0. 6. 30. 까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560-2284, 560-21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319호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5. 25

정 선 군 수

1. 건 명 :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담배소매인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도록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 3. 3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사실조사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되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안 제3조)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따른 협약사항(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0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산업경제과(전화 56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정선군수는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
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제4조(협약) ①제3조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④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0.7.1 시행)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② (생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④~⑬ (생략)

정선군공고 제2010-324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고원조경개발

주소또는거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7-4 네스트빌 412호

서류의 명칭 :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를 2010년 5월 중 귀하의 주소지·거
소지·사무소 등록지로 고지(일반우편·등기우편)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10
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5. 26.

정 선 군 수

지방세 공시송달 내역

행정동	발송지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임계면	경기도 안산시상록 구 이동 717-4 네 스트빌 412호	고원조경개발	임계면 문래리 600-8 (면적 628.0㎡)(2009년 분)	고지서반송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2010-1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결산 공고

2009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결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5. 13.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대 차 대 조 표

당기(제6기) 2009. 12. 31. 현재

전기(제5기) 2008. 12. 31. 현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계정과목	제6 기(당기)		제 5 기(전기)	
	금액		금액	
자 산				
I. 유동자산		374,627,627		374,004,088
1. 현금및 현금등가물 (세입세출외현금:24,737,827)	274,627,627		274,004,088	
2. 단기금융상품	100,000,000		100,000,000	
II. 비유동자산		-		-
1. 수탁투자외기타자산		-		-
1) 사업장 전도금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550,000 (1,550,000)	-	1,550,000 (1,550,000)	-
2. 수탁유형자산		-		-
1) 입 목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80,427,900 (180,427,900)	-	163,446,900 (163,446,900)	-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0,715,840 (5,836,480) (4,879,360)	-	10,715,840 (3,693,710) (7,022,130)	-
3) 구 축 물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234,615,630 (369,050,260) (865,565,370)	-	677,475,990 (151,789,350) (525,686,640)	-
4)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40,626,160 (32,063,450) (8,562,710)	-	40,626,160 (23,941,620) (16,684,540)	-
5)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54,573,610 (154,478,640) (100,094,970)	-	180,834,400 (110,113,860) (70,720,540)	-
6) 공기구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640,923,370 (497,909,000) (143,014,370)	-	595,183,430 (420,522,750) (174,660,680)	-
3. 수탁무형자산		-		-
1) 개발비 (수탁자산취득보조금)	49,005,990 (49,005,990)	-	56,670,140 (56,670,140)	-
자 산 총 계		374,627,627		374,004,088

대차대조표 계속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6 기(당기)		제 5 기(전기)	
	금액		금액	
부 채				
I. 유동부채		274,627,627		274,004,088
1. 미지급금	249,889,800		260,419,093	
2. 예수금	24,737,827		13,584,995	
3. 기타유동부채		-		-
II. 비유동부채		0		0
1. 퇴직급여충당금		-		-
2. 퇴직연금예치금		-		-
부채합계		274,627,627		274,004,088
I. 원시자본금		100,000,000		100,000,000
1. 원시자본금	100,000,000		100,000,000	
II. 자본잉여금		0		0
1. 출연금		-		-
2. 기타자본잉여금		-		-
III. 이익잉여금		0		0
1. 이익준비금				
2. 차기이월이익잉여금		0		0
· 당기순이익 : 0				
· 전기순이익 : 0				
자본합계		100,000,000		100,000,000
부채와자본총계		374,627,627		374,004,088

2. 손 익 계 산 서

제6기(당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5기(전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6 기(당기)		제 5 기(전기)	
	금액		금액	
I. 영업수익		2,593,036,060		2,366,725,620
1. 대행사업수익	2,945,887,000		2,782,205,000	
2. 정산반환금	(242,523,430)		(250,905,960)	
3. 자본예산대체	(110,327,510)		(164,573,420)	
II. 영업비용		2,593,036,060		2,366,725,620
1 급여	487,089,480		441,928,900	
2 제수당	254,586,350		227,033,450	
3 기타직보수	-		445,347,110	
3 무기계약전환자근로자보수	398,460,890		-	
4 기간제근로자보수	93,144,750		-	
4 퇴직급여	104,168,050		106,548,860	
5 복리후생비	348,098,120		286,525,240	
6 여비교통비	35,302,860		40,922,240	
7 통신비	13,155,920		10,445,700	
8 수도광열비	192,676,850		168,754,950	
9 공공요금및제세	9,466,900		5,465,090	
10 일반수용비	45,184,020		44,291,910	
11 피복비	28,488,500		-	
12 도서인쇄비	39,912,930		32,287,170	
13 지급임차료	3,212,220		3,423,220	
14 수선유지비	63,564,970		137,705,040	
15 차량유지비	23,697,530		23,537,060	

손익계산서 계속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6 기(당기)		제 5 기(전기)	
	금액		금액	
16 보험료	32,085,580		38,262,620	
17 지급수수료	83,581,670		70,901,970	
18 업무추진비	6,577,250		6,298,900	
19 교육훈련비	5,429,000		8,713,600	
20 재료비기타	74,203,770		115,011,060	
21 행사등잡비	40,135,350		19,182,710	
22 포상금	34,747,820		27,103,420	
23 배상금	69,000,000			
24 기관성과급	107,065,280		106,894,900	
25 기부금	-		131,500	
III. 영업이익(손실)		0		0
IV. 영업외수익		0		0
1. 수입이자	33,630,773		19,015,602	
2. 정산 반환금	(33,630,773)		(19,015,602)	
V. 영업외비용				
1. 기타영업외비용				
VI. 경상이익(손실)		0		0
VII. 특별이익				
VIII. 특별손실				
IX. 당기순이익		0		0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제6기) [	2009년 01월0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기(제5기)	2008년 01월0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0년 2월 일	처분확정일	2009년 3월 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5 기(당기)		제 4 기(전기)	
	금액		금액	
I. 미처분전이익잉여금		0		0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월미처리결손금)	-		-	
2. 전기손익수이익	-		-	
3. 전기손익수정손실	-		-	
4. 수정후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	-		-	
5.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1. 이익적립금				
2. 감채적립금				
3. 건설적립금				
4. 기타적립금				
5. 일반회계등배당금				
III. 차기이월이익잉여금		0		0

4. 현 금 흐 름 표

당기(제6기) 2009. 01. 01. ~ 2009. 12. 31. 까지

전기(제5기) 2008. 01. 01. ~ 2008. 12. 31. 까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과 목	제 6 기(당기)		제 5 기(전기)	
	금액		금액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3,539		(137,720,896)
1. 당기순이익	-		-	
2. 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		-	
가. 감가상각비	-		-	
3. 현금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		-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623,539		(137,720,896)	
가. 미지급금의증가(감소)	(10,529,293)		(133,879,382)	
나. 예수금의증가(감소)	11,152,832		(3,841,514)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5,891,140)		(445,965,310)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00,000,000		100,000,000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00,000,000		100,000,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815,891,140		545,965,310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00,000,000		100,000,000	
나. 수탁자산의 취득	715,891,140		445,965,310	
사업장전도금의 증가	-			
입목의 취득	16,981,000		101,787,400	
건물의 취득				
건축물의 취득	557,139,640		295,461,600	
기계장치의 취득				
차량운반구의 취득	73,739,210		3,490,000	
공기구비품의 취득	51,874,290		42,426,310	
개발비의 지출	16,157,000		2,800,000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15,891,140		445,965,310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723,257,510		455,263,420	
가.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의증가	723,257,510		455,263,420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7,366,370		9,298,110	
가. 수탁자산취득보조금반납	7,366,370		9,298,110	
IV. 현금의 증가(감소)		623,539		(137,720,896)
V. 기초의 현금		274,004,088		411,724,984
VI. 기말의 현금		274,627,627		274,004,088

5. 재무제표 주식·주기

가. 재무제표작성기준 및 주요회계처리방법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공단회계규정, 행정자치부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예 산 결 산

예산은 행정자치부 공기업예산편성지침 및 정선군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선군수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결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2) 수익의 인식기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정선군에서 위탁한 시설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세입의 징수대행과 그 시설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정선군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정선군 세입금은 정선군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 “군”에 납입하고 있음.

3) 대행사업비의 정산

정선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회계연도 말에 그 집행 잔액과 교부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정선군에 반환하고 이를 정산반환금으로 표시하고 있음.

4) 유형고정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무형자산

자본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이므로 유형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본금 이외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군”의 자산이므로 수탁자산에 계상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 및 지방공기업법상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간접법으로 표시하였음.

자본금으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며, 수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증액하고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을 감액하여 수탁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고, 수탁무형자산(개발비)은 감가상각비를 수탁무형자산 및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을 직접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음.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실질적으로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음.

5)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자금의 관리

기말현재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소요액 전액을 농협중앙회 정선군 지부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고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은 계상하지 않으며, 당기말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불입액은 422,229,205원임.

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기 말 현재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연금은 임직원의 퇴직급여 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다.

(단위 : 원)

과목	예금종류	금액	예입처	비고
계		374,627,627		
현금과예금	계	274,627,627		
	보통예금	249,889,800	정선농협 동면지점	대행사업비
	보통예금	-	정선농협 동면지점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	4,062,655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자동납부금
	보통예금	-	정선농협 동면지점	공포체험관리
	보통예금	1,652,000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카드결제관리
	보통예금	1,813,160	정선농협 정선군지점	시설운영팀 수입금관리
	보통예금	17,210,012	농협중앙회 사북지점	휴양림 수입금 관리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100,000,000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자본금